

2. 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 규정

- 가. 증권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벤처투자 관련 증권신고서 제출 등 공모규제 완화)
- 나. 금융투자업규정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모험자본 이행실적의 인정한도 설정)
- 다. 전자금융감독규정 (전자지급결제대행업무를 영위하는 가맹점에 대한 위험 평가)

2. 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 규정*

가. 증권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2026/7/28 개정 · 시행)

1) 개정 이유

- ☐ 중소 · 벤처기업의 증권 공모시 증권신고서 공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액공모의 범위를 확대하고, 벤처투자조합 및 신기술투자조합 등 벤처펀드의 투자에 대해서는 공모 규제를 완화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 벤처투자 관련 증권신고서 제출 등 공모규제 완화(제2-1조 제2항)
 - 벤처펀드와 집합투자기구와의 유사성을 고려하여 다음의 벤처펀드도 전문가의 범위에 포함시켜 청약 권유 대상자 수 산정시 제외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 「여성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14호의5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전문투자조합
 - 「농림수산물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투자조합

나. 금융투자업규정 (2026/7/8 개정 · 시행)

1) 개정 이유

- ☐ 증권업의 부동산 건전성 규제를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도록 강화하고, 종투사의 모험자본 공급의무 이행 시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낮은 모험자본의 이행실적에 대해 최대 인정한도를 설정하는 한편, 법체계의 정합성 및 타 업권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해, 금융투자업 인가 심사 시 대주주심사요건을 타 업권과 일원화하기 위함

*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금융위원회 규정 및 금융위원회에서 공지하는 고시 및 보도자료,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

2) 주요 내용

□ 부동산 투자금액 한도 규제(제3-6조, 제3-24조의5)

- 부동산 투자금액 비율 개념을 신설
 - 부동산 투자금액 비율이란 자기자본에 대한 부동산투자금액의 비율을 백분율(%)로 표시한 수치로서 세부적인 산정기준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함
- 기존 ‘부동산 채무보증 비율’ 한도규제를 ‘부동산 투자금액 비율’ 한도 규제로 개정

□ 부동산 PF 관련 총당금 적립 정비(제3-8조, 제3-24조의4)

- 증권사의 부동산 PF 관련 건전성 제고를 위해 정상·요주의 여신에 대한 총당금 적립률 차등 요인을 일부 삭제하여 적립률 상향 조정
 - (기존) 정산 분류자산 100분의 0.5 / 요주의 분류 자산 100분의 7
 - (개정) 정산 분류자산 100분의 0.5(다만 1종 금융투자업자의 경우에는 100분의2) / 요주의 분류 자산 100분의 10

□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국내 주거용 부동산 대출 위험값(제3-14조)

-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국내 주거용 부동산 대출을 영업용 순자본 차감항목(위험값 100%)에서 제외하고, 신설되는 부동산 위험액 산정기준(시행세칙 개정사항)에 따라 위험값 차등 적용

□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모험자본 이행실적의 인정한도 설정(제4-102조의10)

- ‘중견기업 및 A등급 채권’ 투자액은 종투사 모험자본 공급가액의 100분의 30까지만 모험자본 공급의무 이행실적으로 인정

□ 금융투자업 인가 시 대주주 심사요건 개선(별표 3 제1호 바목(3))

- 최대주주인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대표자가 개인인 경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상 임원의 자격요건 적용배제

다. 전자금융감독규정 (2026/7/15 개정 · 시행)¹⁾

1) 개정 이유

1) 제56조의8 및 제56조의9의 개정규정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

-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에 대한 위험평가 및 점검을 통해 다단계 결제구조를 완화하여 불필요한 수수료 부담을 개선하고 전자지급결제의 안정성을 제고하는 한편, 전자금융업자의 가맹점 수수료 고지 시점, 내용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수수료 정보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가맹점의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전자지급결제대행업무를 영위하는 가맹점에 대한 위험 평가(제56조의8, 제56조의9)
 - 선불업자와 상위 PG업자가 하위 PG업자에 대해 계약체결시, 갱신시, 계약기간 중 위험평가
 - 경영지도기준 준수 현황, 자기자본 등 주요 재무현황, 정산자금 관리 현황, 최근 1년간 금융제재 및 불법거래 연루 이력 등
 - 평가 결과에 따라 계약 미체결, 계약해지, 시정요구, 중도해지 등 조치
 - 해당 평가 또는 점검 결과에 관한 기록을 평가일 또는 점검일로부터 5년간 서면, 전산자료 등의 형태로 기록·유지
-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가맹점 수수료 고지 시점 및 내용을 명확화(제57조 제2항 및 제3항)
 -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선불업자가 가맹점과 계약체결시, 갱신시, 수수료 부과기준 변경시 가맹점 수수를 고지
 - 가맹점에게 불리하게 수수료 부과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일 1월 전에 고지
 - 가맹수수료 고지시 결제수수료를 구분하여 고지
 - 이 경우 결제수수료란 전자금융결제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가맹점으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를 말함

선임연구원 신경희(02-3771-0854, skh0828@kcmi.re.kr)